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52055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4. 21.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21,445,0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445,0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94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2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197,26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2. 3.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2. 3. 27. 확정되었다.
-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은 2020. 7. 24. 현재 21,445,043원이다.

나. D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1)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5. 5.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과 자녀인 C, 피고가 있었다.
- 2) D의 상속인들은 2020. 4. 2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4. 23. 접수 제6983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지분(2/13)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E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증상도 있는 상태이며, C은 뇌수술을 받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서, 피고가 그 생활비 및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04.경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피고가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생활비 등의 지원을 해준 결과로서 그 금액만큼의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 등으로 특별기여를 한 것과는 달리 개인 간의 채권관계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그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위 생활비 등을 지원해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사실상 양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자신이 건설공사현장에서 타공일을 하면서 공사현장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C이 누나이기에는 하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에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는바, 을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경부터 용인 등지의건설공사 현장에서 파일공무원으로 일하여 왔으며,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F주식회사의 파일향타팀 반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5 내지 18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생존시인 1999. 3.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를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피고가 누나인 C과 가족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일하면서 주거지를 떠나서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몰랐다고 보아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2149호로서 채무자를 D, 채권자를 H조합 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가 2020.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0. 5. 18.자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24.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1,445,043원이고,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I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최소 312,200,000원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H조합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4,678,1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최소 공동담보가액은 85,006,245원 $\{(312,200,000 - 14,678,140) \times 2/7\}$ 이 된다. 따라서 그보다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21,445,043원이 가액반환의 범위가 된다.

4)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1,445,043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21,445,0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명일

목 록

1. 서울 관악구 대 79㎡

2. 서울 관악구 대 30㎡

3. 서울 관악구 /

[도로명주소]서울 관악구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건평 41.06㎡. 끝.

